- 화재조사 선진화를 위한 -

화재조사 정책추진 방향

119 소방방재청

목 차

Ⅰ 소방환경 및 여건

Ⅱ 선진화 추진 방향 및 근거

Ⅲ 화재발생 현황

Ⅳ 화재통계 관리방법 개선

Ⅴ 화재조사 문제점

Ⅵ 당면 추진업무

Ⅶ 화재출동 및 현장활동

Ⅰ. 소방환경 및 여건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문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문제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 안전도시에 관심증가

2010년 중국 칭하이지진

2008년 중국 쓰촨성지진

1995년 일본 고베지진

2009년 캘리포니아 산불 화재

2005년 동남아 쓰나미

2011년 일본쓰나미

2005년 태풍 카트리나

2009년 호주 멜버른 산불

2010년 아이티지진

2010타이완 지진

2010년 칠레지진

세계적인 재앙발생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초고층 및 대규모 복합건축물 화재위험성 상존 성능설계 요구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재해약자의 증가 및 시설의 고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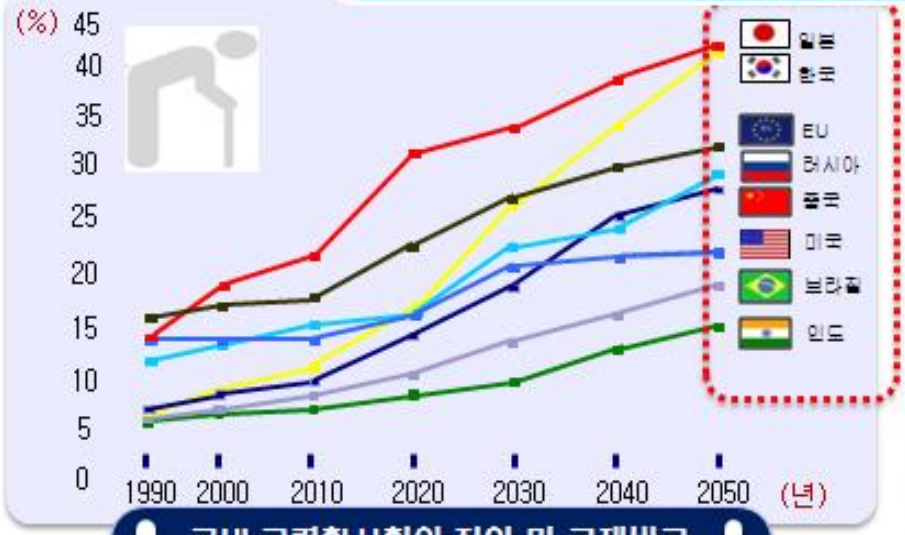

국내 고령화사회의 진입 및 국제비교

총 인구중 장애인 비율(%)의 증가

고령자시설의 초고층화

장애인시설 등의 피난안전성 확보방안 필요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초고층 및 대규모 건축물 화재의 피난요소 기술 요구

국가정책방안 – 저탄소 녹생성장

에너지효율의 증대
고분자계열단열재사용

$V \propto z^{0.36}$

바람의 영향에 따른 화재성상의 변화

불티의 비산 등에 의한 연소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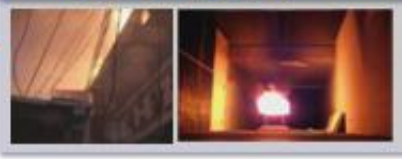

개구분 출화 염으로 인한 화재전파

지하공간과 연계된 대규모 복합건축물 피난안전성 문제

적재가연물의 고분자화

피난 시 군집화에 따른 패닉

내외장재의 화재하중의 증가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건축과 소방의 최적화로 안전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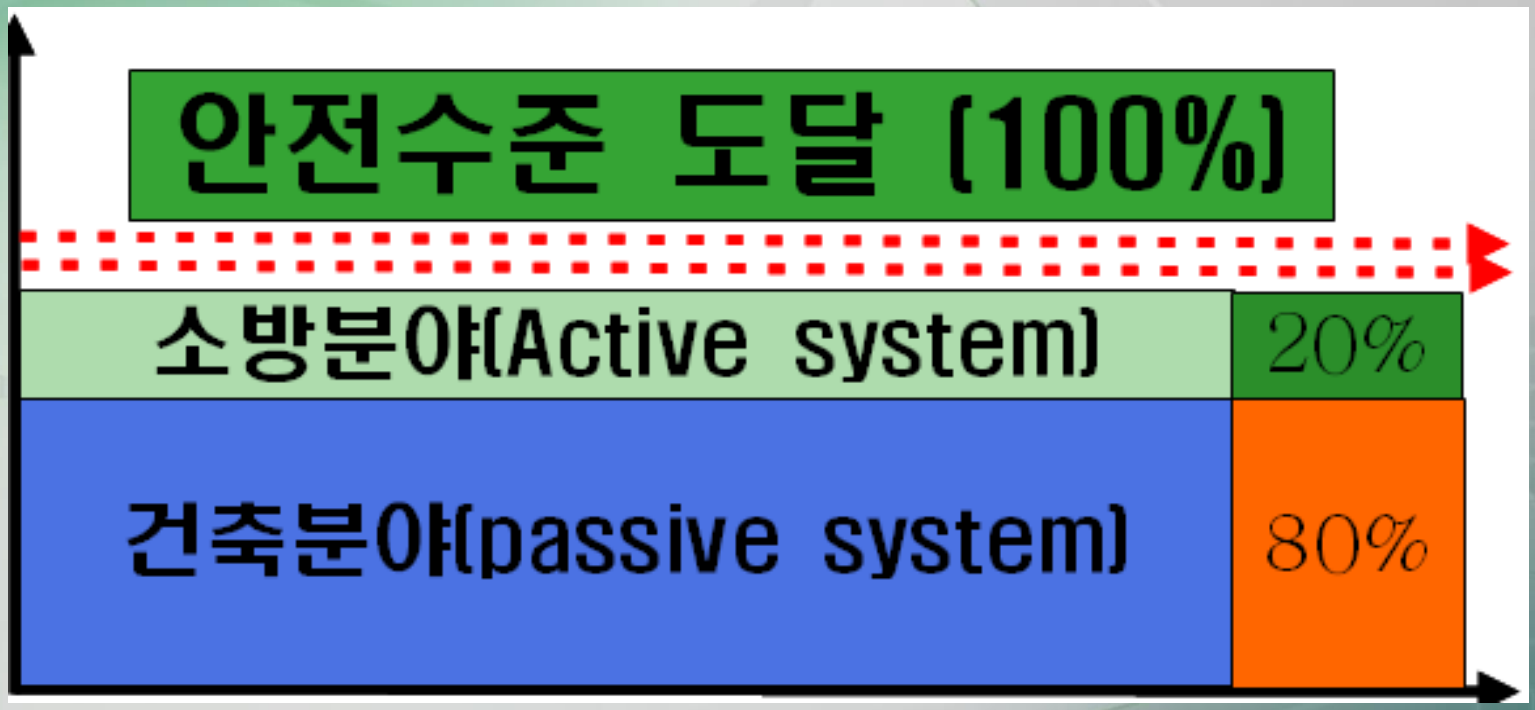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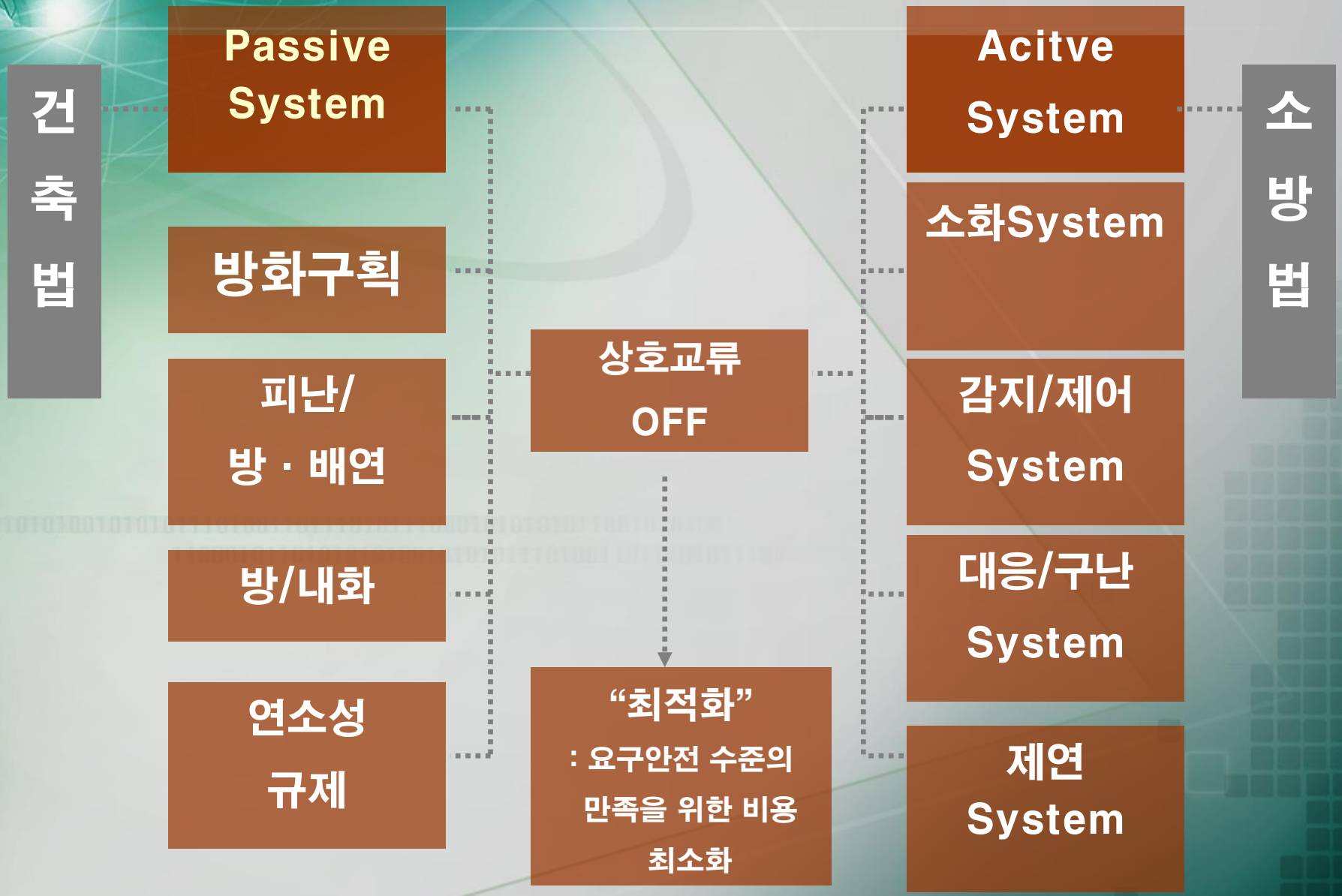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PE Tree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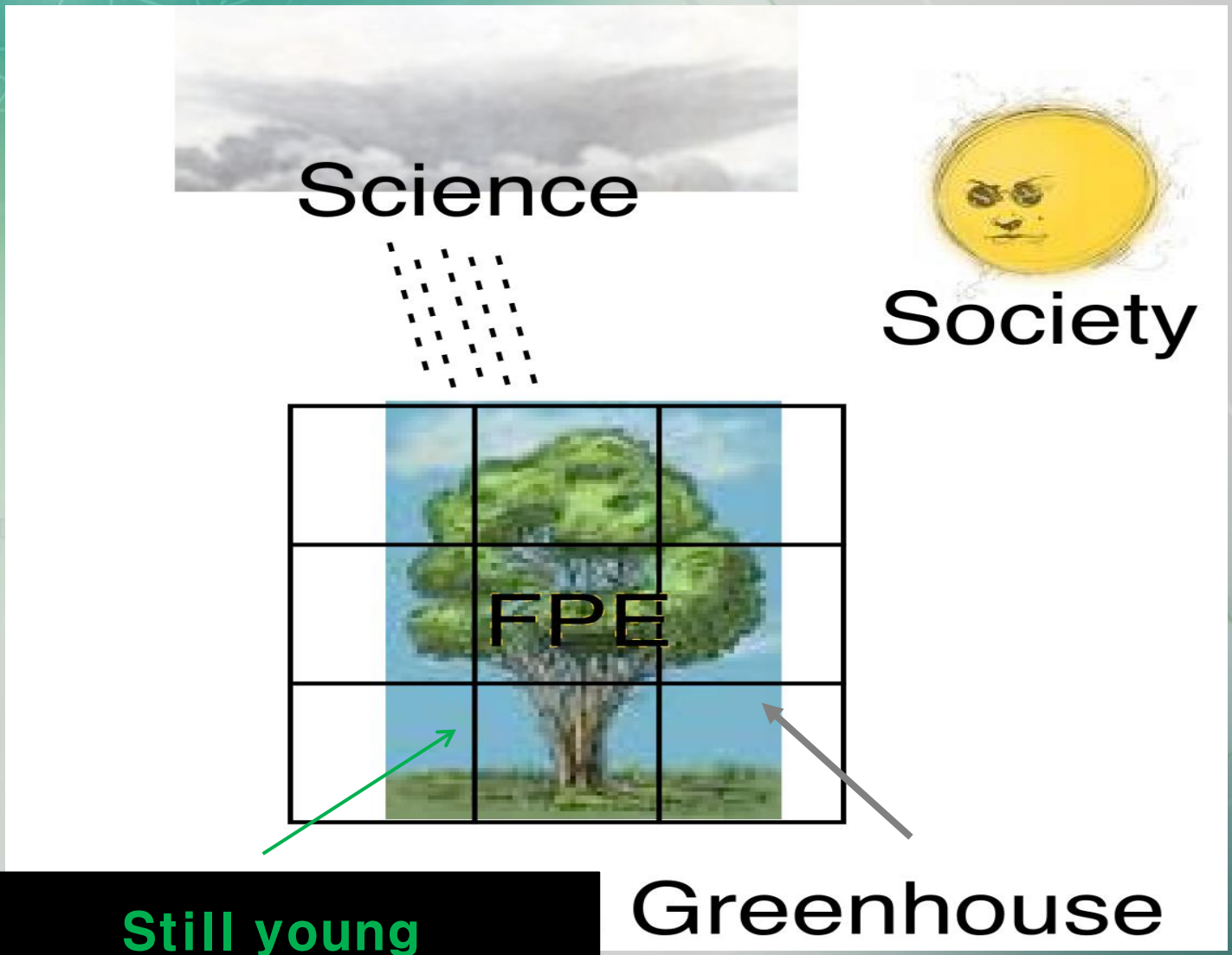

Will it mature?

Still young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Ⅱ. 선진화 추진 방향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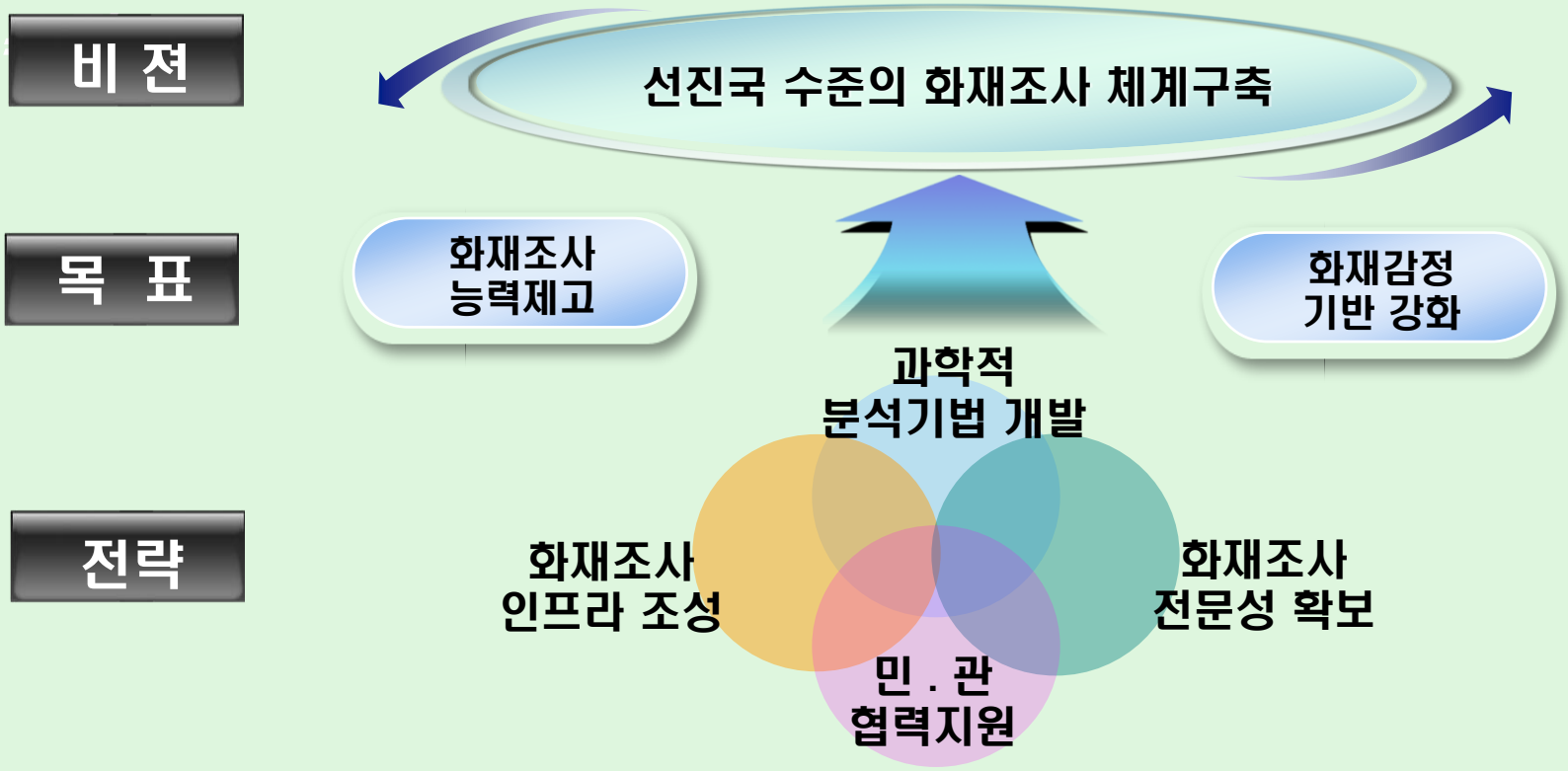

- ❏ 화재조사의 근본구조 개선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화재조사 체계구축
- ❏ 화재조사 전담인력, 조직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화재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법적 근거

소방기본법 제 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시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화재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등)

❑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

화재조사및보고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29호)

❑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Ⅲ. 화재발생 현황

총 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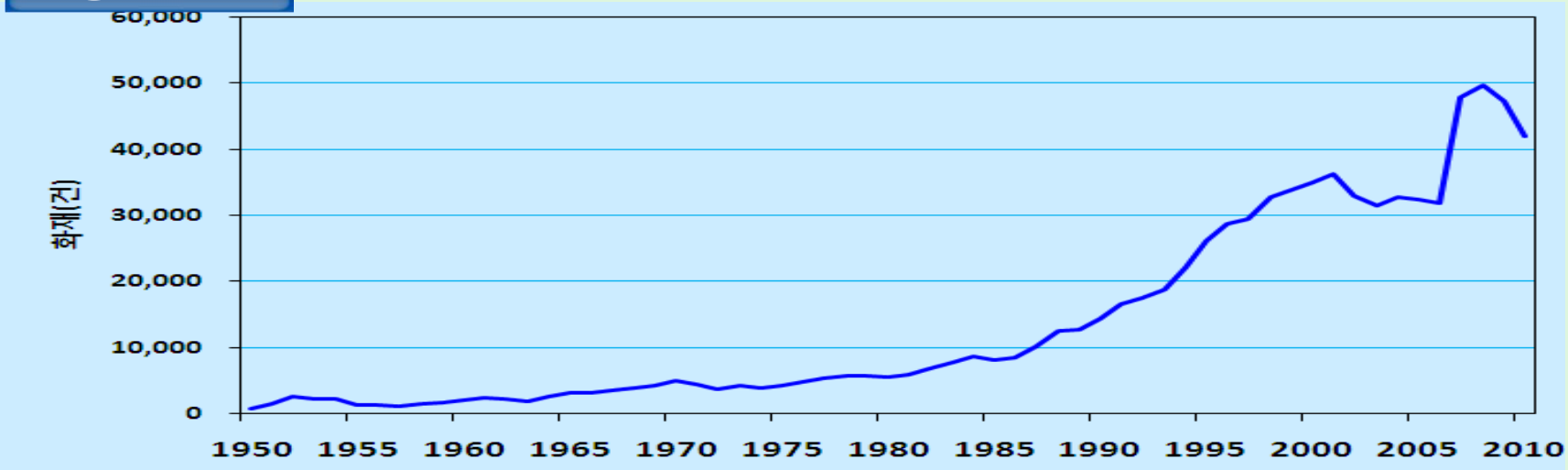

-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연중 1만 건 이내에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화재건수가 1987년 1만 건 돌파를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994년 2만 건을 넘어섰고, 1998년 연간화재 3만 건 시대에 접어듬.
- 2007년 47,889건, 2008년 49,831건, 2009년 47,31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는 41,863건, 2011년 43,875건, 2012년 43,249건, 2012년 43,249건, 2013년 40,932건으로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점차 감소함.

화재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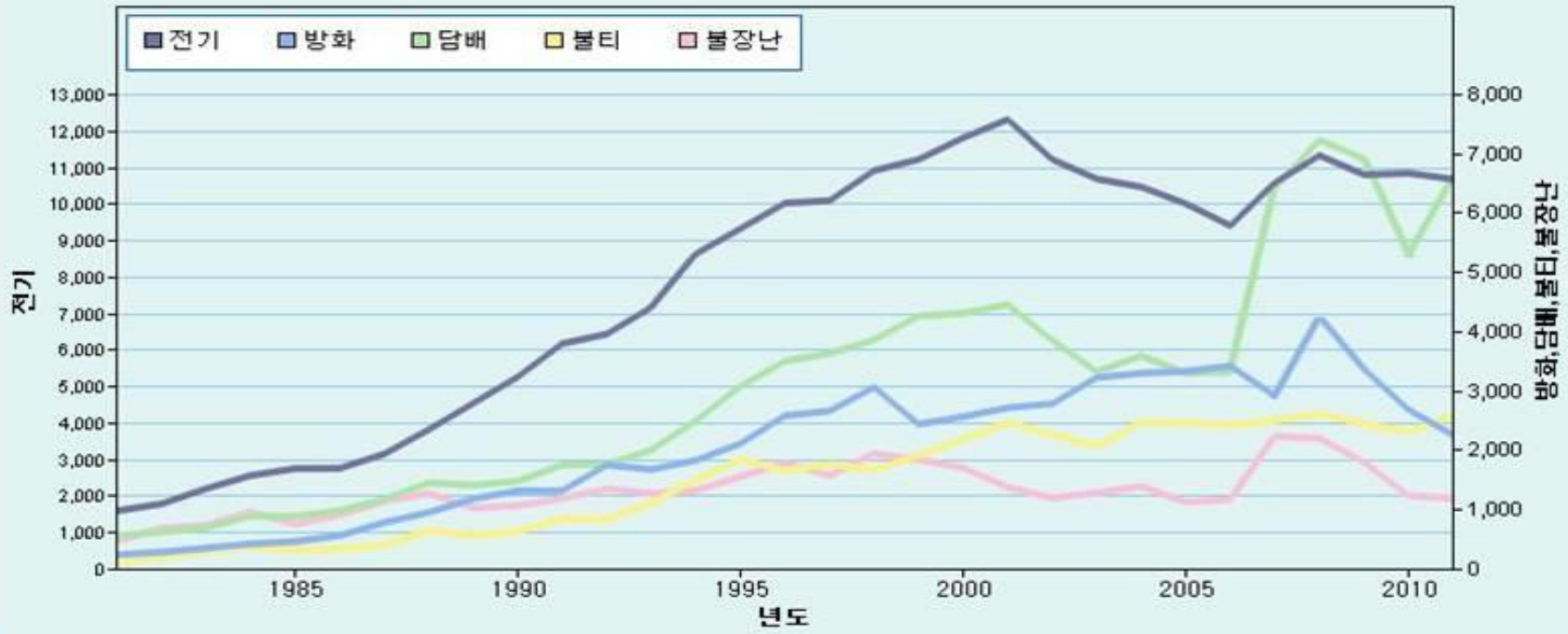

- 주요 화재원인은 줄곧 전기 1위, 담뱃불 2위, 방화가 3위였으나 2005년도에 일시적으로 방화가 담뱃불 화재를 추월하기도 하였음.
- 전체화재의 30%이상을 차지하던 전기화재는 2013년 24.7%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는 등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2013년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3년(건수)	40,932	2,184	307	1,877	434,423
2012년(건수)	43,249	2,223	267	1,956	289,494
전년대비(건수)	-2,317	-39	40	-79	144,929
전년대비(%)	-5.4	-1.8	15	-4	50.1

-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
-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총 40,932건('12년 대비 5.4% 감소)의 화재로 인하여 2,184명의 사상자와 4,34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1일평균 112.1건('12년 118.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0명('12년 6.1명)이 죽거나 다치고 11.9억원('12년 7.9억원)의 재산이 불길 속에 사라짐
- '13년의 주요 화재로는 3월 18일 전남 여수시 대림산업 여수 HDPE 공장 화재로 사망 6명, 부상 11명, 재산피해 4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5월 3일 경기도 안성시 코리아냉장(주) 화재로 재산피해 988억원이 발생

발화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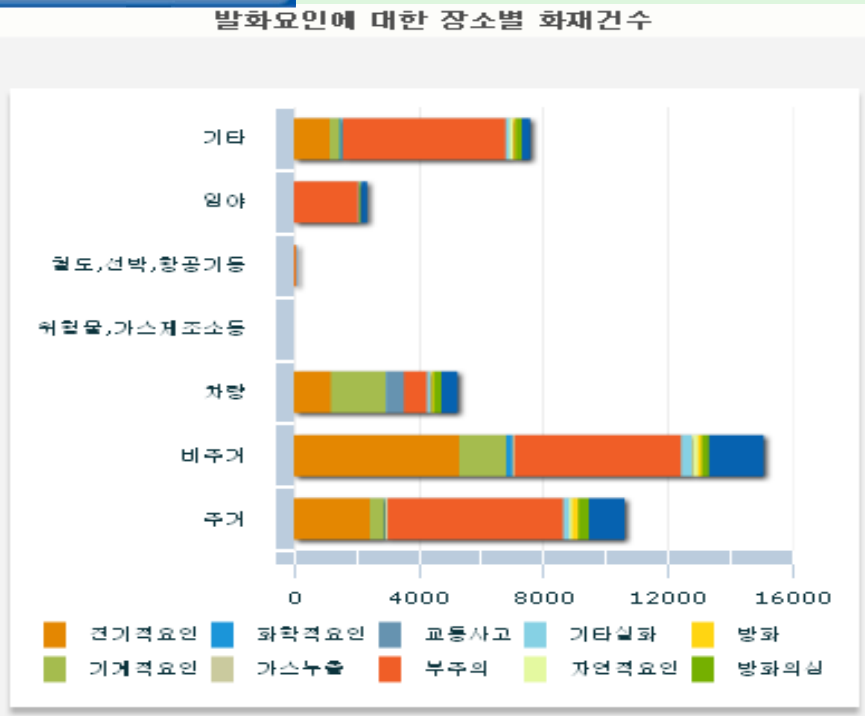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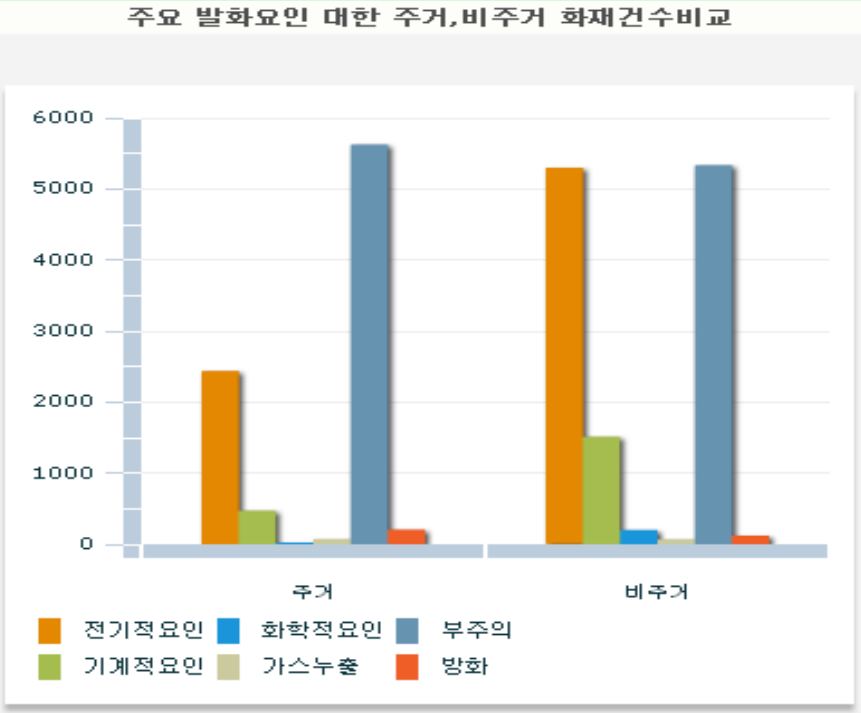

구분	계(건)	전기적 요 인	기계적 요 인	가스 누출	화학적 요 인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실화	자연적 요 인	방화	방화 의심	미상
2013년	40,932	10,103	4,058	181	322	567	19,012	843	397	497	1,071	3,881
2012년	43,249	10,488	4,261	170	276	576	20,247	1,036	230	418	1,288	4,259
전년대비(건수)	-2,317	-385	-203	11	46	-9	-1,235	-193	167	79	-217	-378
전년대비(%)	-5.4	-3.7	-4.8	6.5	16.7	-1.6	-6.1	-18.6	72.6	18.9	-16.8	-8.9

화재장소

화재장소에 대한 월별 화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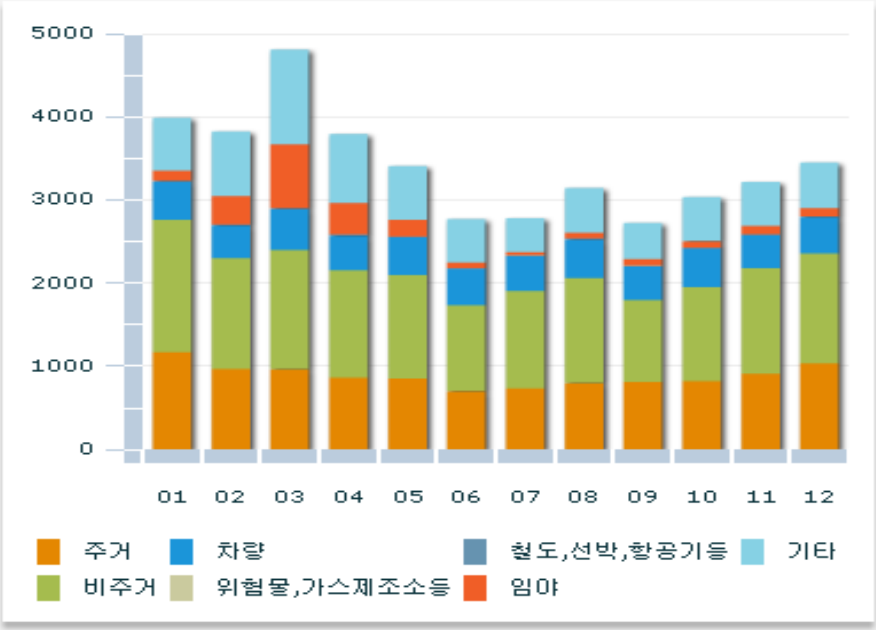

월별 주거,비주거 화재건수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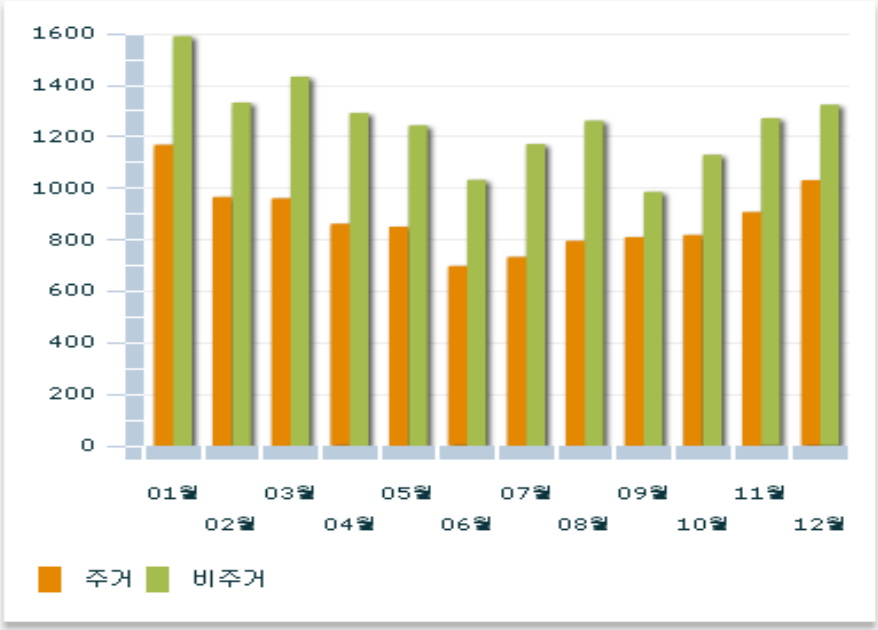

구 분	계(건)	주 거	비주거	차 량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철도,선박, 항공기	임 야	기 타
2013년	40,932	10,596	15,066	5,249	24	90	2,334	7,573
2012년	43,249	10,691	15,966	5,506	28	120	2,691	8,247
전년대비(건수)	-2,317	-95	-900	-257	-4	-30	-357	-674
전년대비(%)	-5.4	0.9	-5.6	-4.7	-14.3	-25	-13.3	-8.2

월 별

화재장소에 대한 시간대별 화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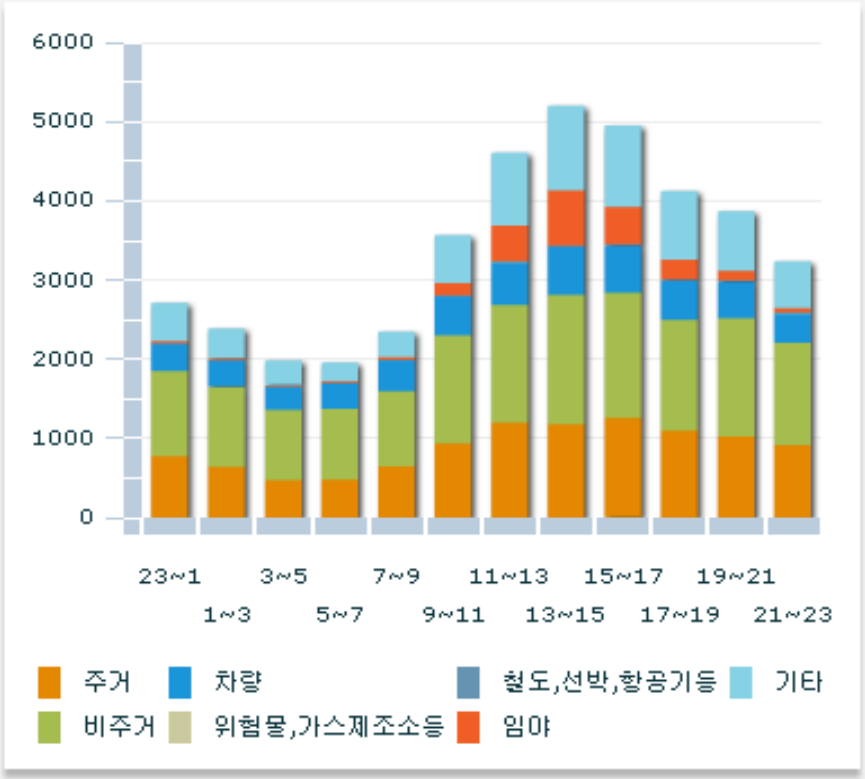

비주거시설의 시간대별 화재건수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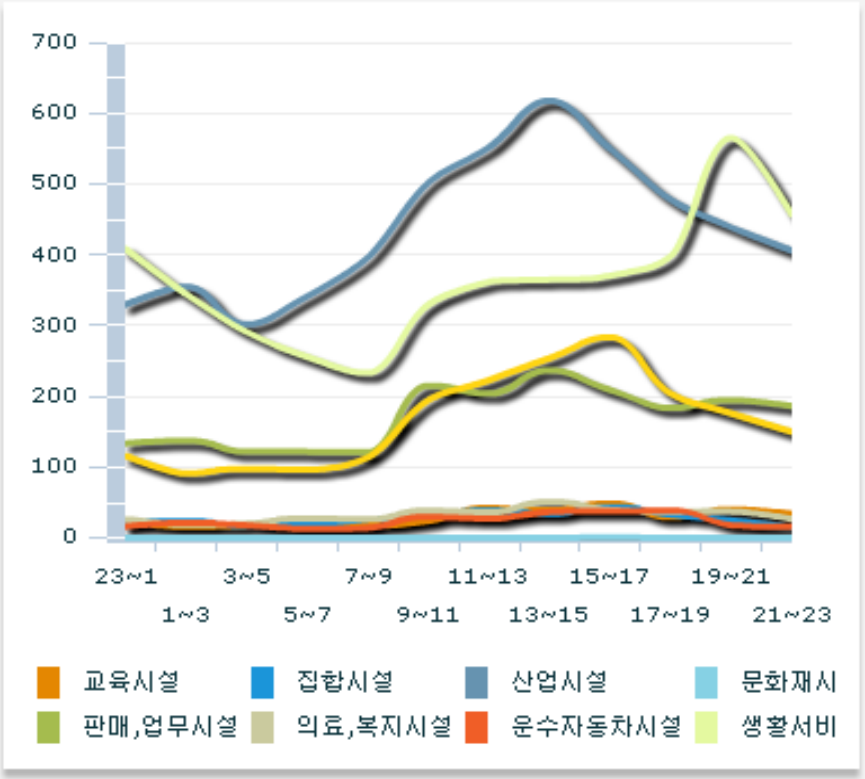

구분	계(건)	23~1	1~3	3~5	5~7	7~9	9~11	11~13	13~15	15~17	17~19	19~21	21~23
합계	40,932	2,710	2,385	1,982	1,959	2,344	3,564	4,610	5,201	4,952	4,122	3,867	3,236

시간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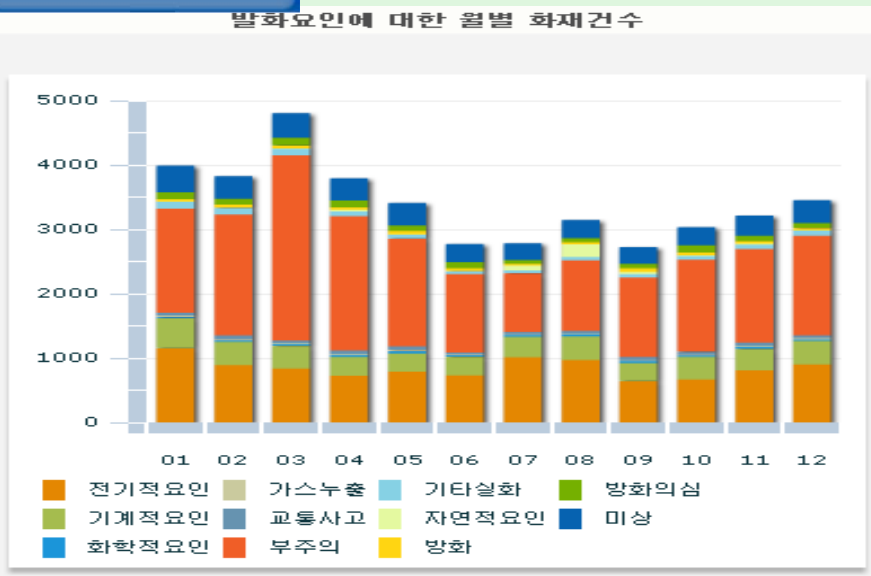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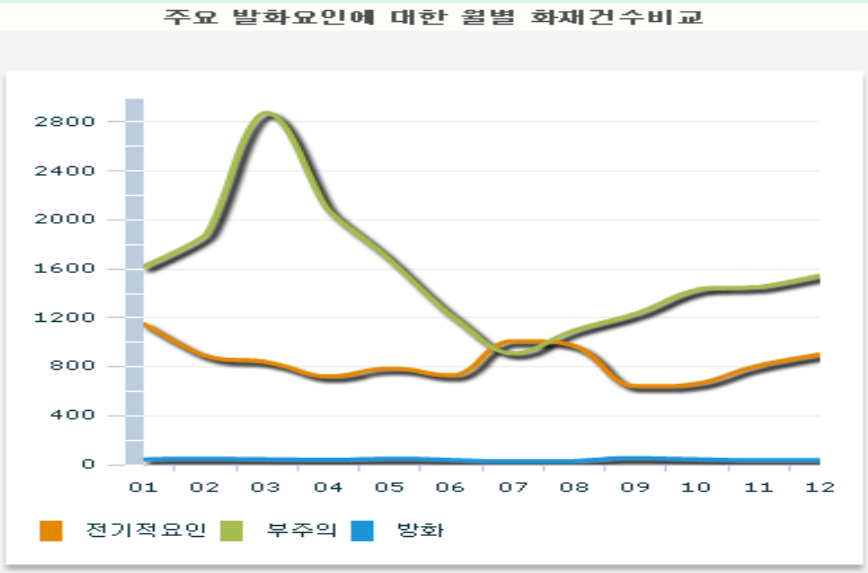

구분	계(건)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방화 의심	미상
합계	40,932	10,103	4,058	322	181	567	19,012	843	397	497	1,071	3,881
1월	3,990	1,150	464	20	23	44	1,618	104	5	42	105	415
2월	3,823	889	361	19	18	66	1,875	102	1	50	93	349
3월	4,805	836	352	27	16	42	2,876	99	7	45	119	386
4월	3,793	721	297	31	14	54	2,085	76	24	39	104	348
5월	3,409	785	286	35	17	55	1,675	61	7	51	88	349
6월	2,769	730	288	23	12	32	1,219	35	14	39	95	282
7월	2,782	1,011	317	28	10	38	910	45	76	27	60	260
8월	3,144	969	365	30	11	44	1,096	53	200	32	63	281
9월	2,721	640	279	32	11	53	1,233	54	35	56	69	259
10월	3,033	664	351	24	9	49	1,427	63	9	44	110	283
11월	3,214	808	332	34	19	46	1,452	70	15	36	89	313
12월	3,449	900	366	19	21	44	1,546	81	4	36	76	356

전기화재현황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

연도별	총계 (건수)	전기화재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화학적 요인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방화 의심	미상
2013년	40,932	10,103 (8,916)	4,058	181	322	567	19,012	843	397	497	1,071	3,881
2012년	43,249	10,488 (9,256)	4,261	170	276	576	20,247	1,036	230	418	1,288	4,259
2011년	43,875	10,664 (9,374)	4,072	217	299	532	20,238	861	386	488	1,762	4,356

※ 전기화재 현황 : 2013년 8,916건(21.7%), 2012년 9,256건(21.3%), 2011년 9,374건(21.3%)

■ 2013년 전기화재발생 현황

발화요인	화재건수	비율(%)	발생비율(%) (자동차전기 제외시)
전기적 요인(소계)	10,103	100%	24.7(21.7)
누전,지락	415	4.1%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981	9.7%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2,561	25.3%	
과부하/과전류	1,094	10.8%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671	6.6%	
층간단락	111	1.1%	
트래킹에 의한 단락	715	7.1%	
반단선	138	1.4%	
미확인단락	2,539	25.1%	
기타(전기적요인)	878	8.7%	

Ⅳ. 화재통계 관리방법 개선

추진배경

❑ 소방환경의 변화로 화재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통계관리로 맞춤형 예방정책과 대응계획 수립 필요

❑ 화재사망자 저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노력 불구, 자살방화·교통사고 등 화재예방이 불가능한 사망자 증가*로 정책효과 왜곡

* 13년 법정대상(특정소방대상물) 사망자는 3명 증가하였으나 기타(방화·교통사고) 사망자 37명 증가

추진내용

❑ 맞춤형 예방정책 수립을 위하여 화재 발생현황을 법정(특정소방대상물)·비법정(주택·임야·자동차 등)·기타 관리대상(방화, 교통사고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관리

현 행
▸ 화재를 구분 없이 통합관리 -건축물·자동차·위험물·선박·항공기·임야·야외 등 모든 장소 - 방화(자살·타살), 교통사고, 폭발 등 모든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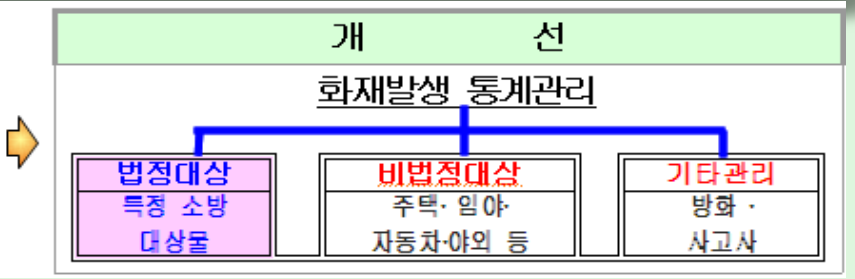

개선내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관리대상* 현황(법정·비법정·기타 관리)” 란 신설 (14. 1월)

* 화재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를 법정·비법정·기타 관리로 구분하여 통계관리

❑화재발생현황 통계관리 개선방안* 시.도 통보(14. 2월)

* 화재발생 원인이 방화, 교통사고, 소화기 폭발 등은 기타 관리대상으로 통계 분류하고 나머지 화재는 법정대상과 비법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통계관리

‘14년 1/4분기(1월~3월) 인명피해 분석결과

화재 사망자	법정대상	경기북부 6명, 부산 4명, 대구·대전·충남·전남·창원 각 1명 증가
	비법정대상	강원 3명, 경북 3명, 대구·광주·울산·경기 각 1명 증가
화재 부상자	법정대상	전남 8명, 경남 4명, 경기 2명, 대전 1명 증가
	비법정대상	서울 13명, 강원 6명, 광주 4명, 충북 4명, 인천·세종 각 1명 증가

Ⅴ. 화재조사 문제점

화재조사 에 대한 환경의 변화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면시행에 따른 화재원인에 대한 요구증대

–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는 시대적인 요구임

❑ 방화 등 경찰과 관련된 조사업무의 체계정립 필요

– 범죄관련을 이유로 방화에 대한 정확한 화재조사 미실시

❑ 발화원의 다양화로 인한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 가중

– 공업기술 발달에 의한 신소재의 출현 · 건물용도의 복합화

조사업무의 중요성 인식 미흡에 따른 지원부족 등과 변화에 대한 대처미흡 및 임기응변식 대응

문 제 점

- ❏ 화재현장 증거물 및 공신력 확보에 대한 법률기반 미흡
- ❏ 화재조사 관련 법규 정비 및 보완 필요
- ❏ 방화에 대한 경찰과 업무 공조체계 부족
- ❏ 중앙 및 일선 소방서의 화재조사 전담기구 설치미흡
- ❏ 연구소 등 화재감식·감정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부재
- ❏ 화재조사 자료를 소방행정에 반영하는 환류(Feed Back) 기능 미흡

Ⅵ. 당면 추진업무

1.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추진내용

-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소방에서 화재조사 주도
- 화재조사관련 법률의 기능 통합을 위한 법률제정
- 화재현장 조사활동 권한 확보에 관한 사항 법률에 반영
- 화재조사 책임주체 명확히 함
- 화재현장 출입통제권과 증거물 수집. 보존 조치권 명시
- 국가화재정보센터 설치 · 운영

■ 그간 추진경과

- 화재조사 발전방안 공청회 개최(‘13. 7. 12/ 국회의원회관)
-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발의(‘13. 8. 20/ 박덕흠 의원)
-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 설명회(‘13. 11. 20)
-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안행위 법안소위(‘14. 4. 22)

2. 화재감식평가기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

■ “화재조사(감정 · 감식)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 제도 시행

- 자격시험 합격자 (기사 279명, 산업기사 217명)
- 제2회 시험 필기(9.20), 실기(11.1~11.4)

■ 화재감식평가기사 · 산업기사 활용방안 마련

- 화재조사관련 학문 ·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전문인력 양성
- 화재조사분야 신규업종 창출을 통한 전문인력 취업기회 확대

■ 現 화재조사관 자격증 학점은행제 운영

- 화재조사관 자격을 평생교육진흥청에 자격학점 인정
- 인정학점 30점(해당전공 소방학)

※ 기술사 35, 기사 20, 산업기사 15

3. 대형화재 등 합동조사단 운영

■ 현실태

- 언론 등에서 경찰·국과수에서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보도됨에 따라 소방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위상이 저하

■ 대형화재 등 합동조사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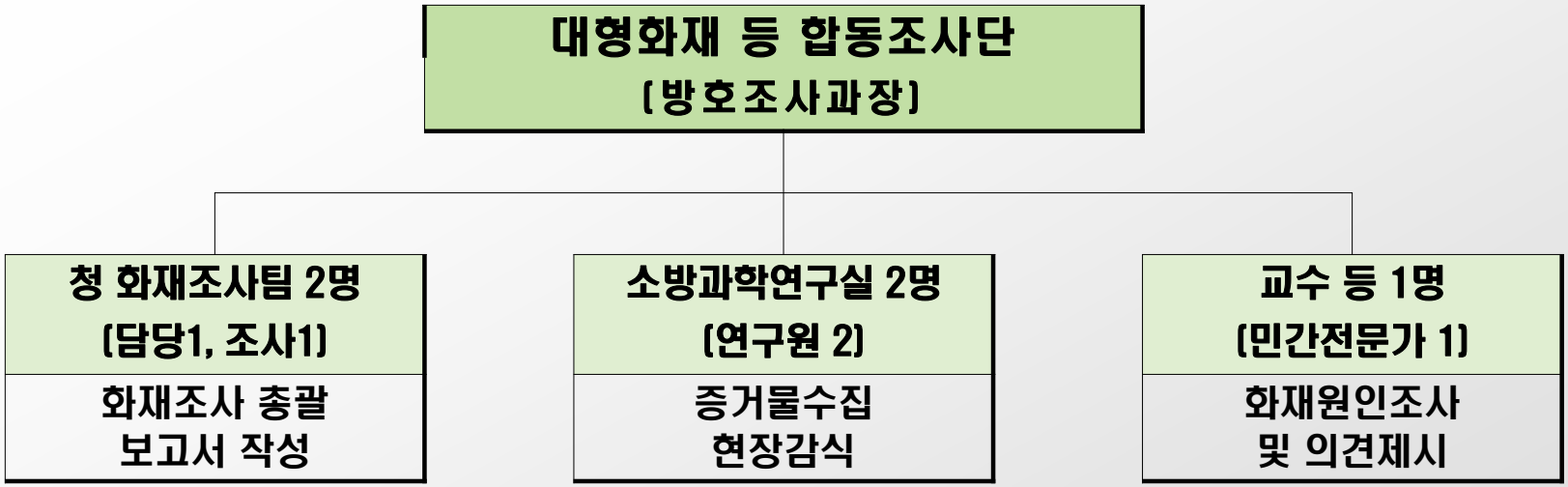

※ 상황발생시 현장 및 주요 조치사항 우선 처리 후 대형화재 등 합동조사단 구성.운영

▶ **대형화재 등 합동조사단** : 대형화재,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방재청 합동조사단(비상설)을 말함.

■ 추진내용

- **시기 : 사고통보 받은 이후 12시간 이내**
- **구성 : 소방방재청 화재조사, 소방과학연구실, 교수 등(민간전문가)으로 민.관(民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운영**
- **인원현황**
  - 기본인원 : 5명(청 화재조사 2, 소방과학연구실 2, 교수 등 1)
  - 대형화재 : 7명 이상(청 화재조사 3, 소방과학연구실 2, 교수 등 2)
  - 전문가 104명 : 교수 62, 전기.가스 20, 전문가 17, 연구소 5
- **운영방법 : 방호조사과장 지휘하에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출동**
  - 민간전문가 등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상시 출동체계 확립
  - 청 첨단화재조사장비 확보 및 활용으로 과학적 화재조사기능 강화

4. 화재조사요원 인원보강

■ 현실태

- 소방방재청 : 화재조사계 – 담당1, 직원2 총 3명이 담당
- 일선소방서 : 화재조사, 진압, 출동로, 소방용수 등 업무겸임
- 화재조사 업무과중 및 관심부족으로 화재조사 기피분위기 팽배

■ 추진방안

- 우리청 : 화재조사 전담부서 운영
  – 인 원 : 10명(원인조사 4, 피해조사반 3, 화재분석반3)

※ 원인조사 분야 : 전기, 가스, 화공, 기계, 신소재 등 전공자 확보

- 소방본부·소방관서 : 현장 위주 전담인력의 조사, 감식, 감정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

※ 박근흠 의원 입법발의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5. 화재조사요원 사기진작 방안

- 전문화재조사관제 운영으로 장기복무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 승진가점, 근무수당,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화재조사관 1명씩 근무하고 있는 관서는 최소 2명씩 배치토록 지도
- 화재조사관,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취득자 현장 조사요원 우선 배치
  - 화재조사 전문자격소지자 배치율 평가에 반영
- 화재조사업무 교육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간부 공무원 의식전환
  - 화재조사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 화재조사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 화재조사 제도 벤치마킹 기회 마련
  - 화재조사 발표대회 수상자 및 화재조사 공로자 우선 연수 기회부여

6. 화재조사 증거물 법적 증거능력 제고

■ 현실태

- 화재감식 전문기관 부재, 과학적 조사 미수행으로 공신력 저하

■ 추진방안

- 화재조사 전문감정기관 기반조성
  -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
    ※ 연구인력 4명(연구관3, 연구사1)
-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화재감식 연구 수행
  - 향후 국가 중요화재 감식 · 감정을 주도적으로 수행
  - 대형화재 등 합동조사단 운영시 연구실과 합동조사
- 유관기관(민간) 화재감정연구소 설립 지원(학회 및 연구기관 등)
- 대학 및 연구소 등 화재감정연구 Network 구축
  - 화재감식 · 감정분야 참여를 위한 MOU 체결 및 교류 내실화

7.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현실태

- 데이타의 부정확성, 미흡한 분석 정보로 인하여 소방정책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추진방안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고도화 추진
  - 사업기간 : '08년 ~ '17년(사업비 약 30억원 정도)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용 전담부서 운영
  - 1단계 : 화재통계정보 분석 전담인력(1명) 운영
  - 2단계 : 화재통계정보 분석반 운영(3명 : 령1, 경1, 위1)
- 국가화재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 화재조사에관한법률에 국가화재정보센터 입법 추진중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화재통계 정보 체계적 관리
  - 화재분석 리포트 생성 및 논문, 각종 간행물 발간

8. 민 · 관 공동연구 및 협력 지원

■ 현실태

- 화재조사 · 감식분야 학술 연구와 정책제시에 대한 기능 미흡

■ 추진방안

- 화재조사관련 학회 설립 지원
  - 화재/소방이 주가 되는 “한국화재감식학회” 발족(‘09. 5월)
    ※ 학회 학술대회시 우수논문에 대한 청장표창 지원(20점)
-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 개최 추진 : ’ 14. 10월경
  - 발표 우수자에 대한 장관님 , 청장님 표창 수여
- 전국 화재조사 사례발표 및 연구회 지속 추진
  - 화재조사정보 공유를 위하여 지속적 추진(‘14. 4. 10. 7회 개최)
- 민 · 관 협력사업 지원 및 참여
  - 한국화재감식학회, 화재보험협회, 전기 ·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업무협업 및 세미나 개최

Ⅶ. 화재출동 및 현장활동

1.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 「화재진화사 자격제도」의 현장 적용성 강화

- 화재진압 '자격인증제 '에서 '능력평가제'로 전환, 현장대원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 지휘역량 및 전술운용 능력 강화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 13.12.27 개정/' 14.1.1 시행)

구분	기존	개정
경력자 실기시험 항목조정	20개 과목	10개 과목
현장지휘관 교육과정 이수시간	4시간	6시간

■ 현장대응체계 연구개발 및 소방전술 경연대회 개최(5월, 10월)

-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전술 개발 보급 및 운용능력 향상

■ 소방전술 및 현장활동 안전매뉴얼 숙지와 개인안전장비 착용훈련 강화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활동 안전수칙, 개인안전장비 착용법 등에 대한 현장확인 지도점검제 실시(상 · 하반기)

2. 재난관리 『골든타임제(Golden Time)』

■ 재난 및 사고의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 적정시간 내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골든타임제(Golden Time) 추진

※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제』시행계획 보고(대통령 업무보고, 2/14)

■ (화재) 출동지령 후 5분 이내 초기 대응

- 소방차 우선 출동 및 소방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불법 주 · 정차 단속 강화

■ (산불) 신고접수 후 헬기 30분 이내 초기 대응

- 산림청 헬기 출동을 위한 보고체계 개선(신고 접수→출동)

■ (유해화학물질 등) 사고접수 후 2시간내 전문가 현장투입

- 소방관서 및 지방환경청별로 관련 전문가 인력 풀 확보, 비상연락체계 유지

3.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

■ 현실태 및 문제점

- 그간 법.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 등 각종 정책 추진
  ⇒ 소방차 출동지연 사례 빈번

※ 최근 5년간 소방차 5분이내 현장 도착율

구분	평균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도착율(%)	65	63.2	62.6	71.7	72.1	58.1

- 도심지 교통량의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에 따른 소방차 긴급출동 대책 마련 지속적 제기

■ 실태 분석

- (광역시) 5분 도착율 75.5% ⇒ 교통정체 및 불법 주정차가 주원인
- (도단위) 5분 도착율 49% ⇒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 출동이 주원인

■ 목표율

- 소방차 5분이내 현장도착율 향상 : '13년(58%)⇒'14년(62%)⇒'17년(74%)

■ 개선 방향

● (시스템) 교통신호 연동 · 제어를 통한 소방차 우선 출동시스템 구축 및 소방관서 앞 출동 신호등 제어시스템 설치 등

※ 안전행정부(재난안전연구원) R&D 예산 활용, 생활 안전지도 시범 도시중 대도시 및 화재다발지역에 시범 적용

-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관서 217개소 중 정비가 필요한 164개소 우선 설치 추진

● (법제도) 소방출동로 관련법령 재정비

-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등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 단속기준 마련
-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시스템(새올행정 및 세외 수입시스템)에 양보운전 의무 위반 세목코드 신설(안행부 등과 추진중)

■ 교통신호 연동 · 제어를 통한 소방차 우선출동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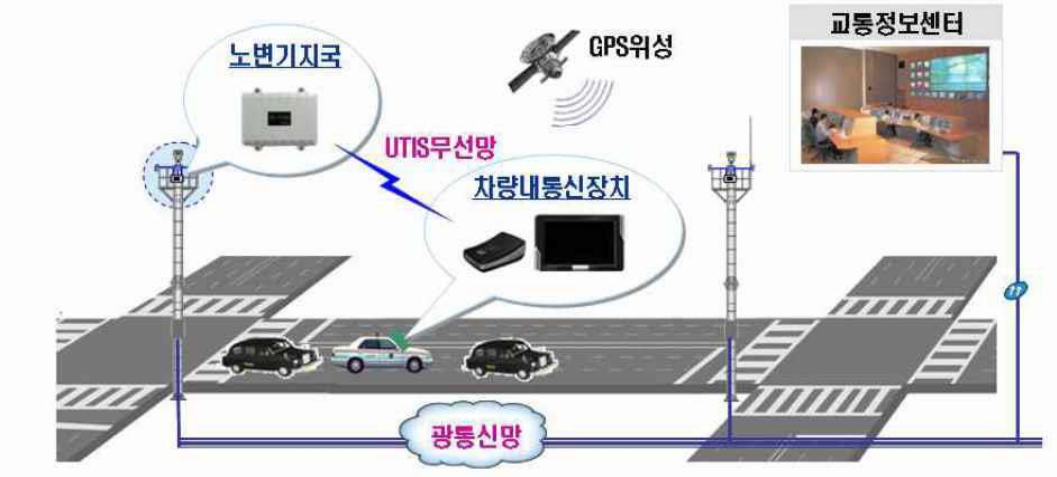

재난현장 출동정보를 경찰청 교통관제센터에 제공하면 출동경로 · 진행시간을 감안, 순차적으로 신호제어

※ 전국 신호교차로(22,947개소) 중소방차 주요 경로(8,031개소) 우선 설치

■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등 설치를 통한 안전성 및 신속성 확보

안전행정부(안전개선과)에서 특별교부세 확보 추진 중 ('17년까지 364개소 단계적 추진)

■ 긴급차량 양보운전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개선

과태료 부과시스템(새올행정 및 세외수입시스템)에 양보운전의무 위반 세목코드 신설 추진중(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및 지방세 분석과)

■ 소방출동로 관련법령 재정비 및 자율준수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 도로교통법(양보의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건축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소방차량 통행 확보 등)

■ 교육홍보

- 테마설정 기획홍보 추진을 통한 소방차 양보운전 공감대 확산

※ '14년 홍보테마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 공중파 공익광고 및 대중교통 내·외부 광고 등 시각적 홍보전개

-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 단체 등을 홍보요원으로 위촉, 캠페인 실시 등 자율선도 분위기 조성

< 추진 일정 >

- 재난안전연구원 우선출동시스템 연구용역('14년 3월) ⇒ 생활안전 도시(1~3개소) 시범적용('15년) ⇒ 전국 확대('16년)
- 신호제어시스템 '14년부터 '17년까지 364개소 설치 확대
-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등 범국민 집중홍보(연중)
- 소방차 양보운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연중)

4. (가칭) 화재경계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가칭) 화재경계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효과적인 화재 경계 및 진압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내용

- 도로 개설시 소방관서 협의 및 출동 장애요인 개선을 통한 출동로 확보
- 불법주정차 · 양보운전 위반 단속 과태료 소방재원화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등) 설치 · 관리 의무 명확화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및 관리, 화재진화시설 확충 및 종사의무 등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 및 건축 · 가스 등 관련 정보 공유 의무화
- 화재진압전술 및 첨단진화 · 안전장비의 연구개발 기반 마련 등

■ 추진방법

- 법률 제정(안) 마련(화재경계 및 대응에 관한 정책개발, 5천만원)
- 관련 부처 등 의견조회 및 법제처 심사

감사합니다 Thank you

즐거운 메세지

- 입꼬리를 올리고
- 눈썹을 들고
- 상체를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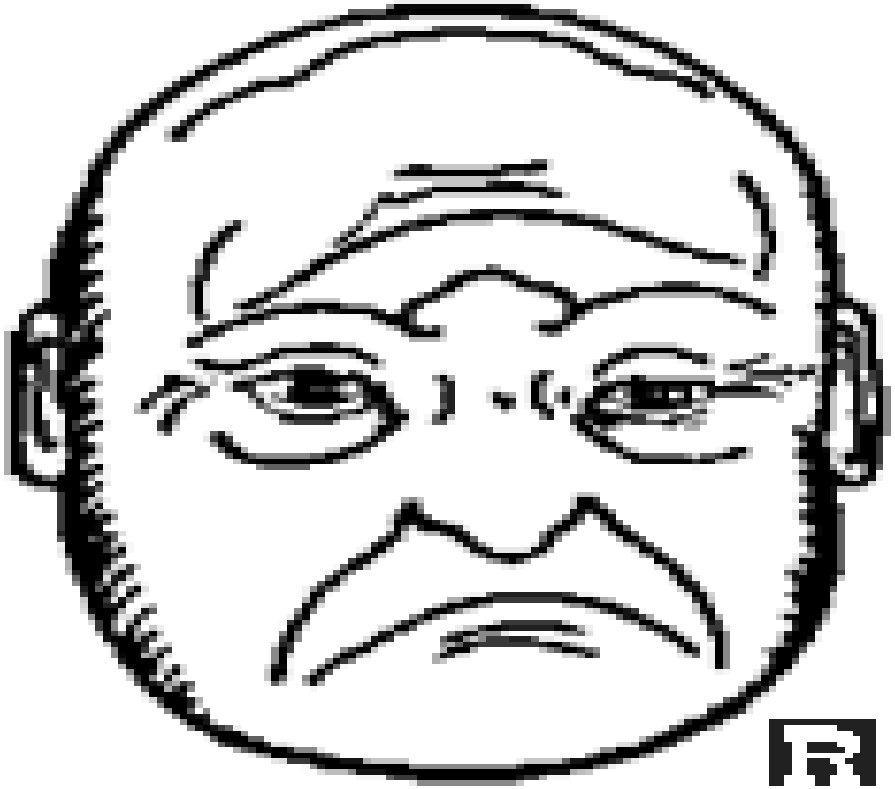

기분 좋은 마법의 맞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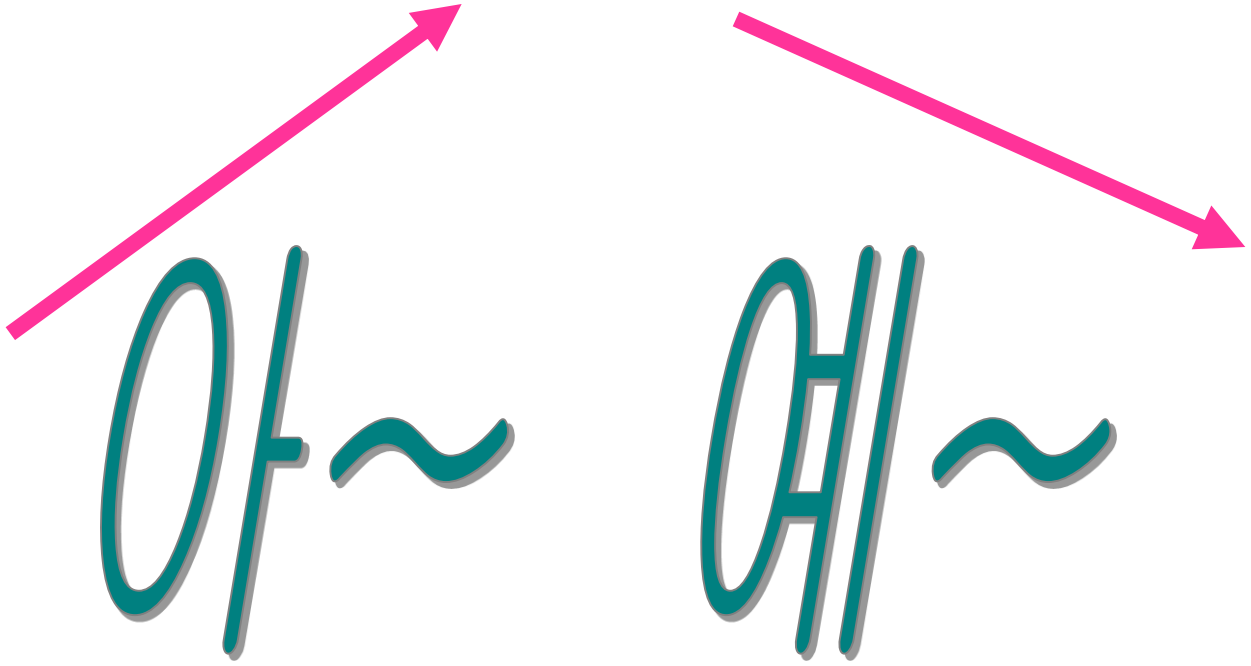

경청, 공감

The art of communication

- 경청 &
  공감 &
  칭찬

“20세기의 인물” 시사주간지 타임

98년 미 포춘지 선정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2위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3위 -97년 월 스트리트 저널 조사-

NAVER BLOG
INHWA WOR

The art of communication

여기서 잠깐!!!!!!!!!!!!

눈도 둘, 귀도 둘이면서

입은 하나인 까닭은 ???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는 막을지언정
교아래 가득 놓인 것(입)의 막기 어렵다.